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덕(고객번호 09729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00,4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9. 12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204번길 *(부암1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하*대(고객번호 403737-11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7,3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8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31번길 *(부암1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철(고객번호 095820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5,8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12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*(부암1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정*용(고객번호 41416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4,2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6. 02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96번길 *(부암4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안*순(고객번호 10849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8,1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5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*(가야3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에 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장*선(고객번호 079863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1,9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6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45번길 *(범전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에 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관(고객번호 07933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9,64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2. 02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 *(범전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천*권(고객번호 103554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80,3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2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57번길 *(당감4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호(고객번호 103567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4,5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12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57번길 *(당감4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레(고객번호 097396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9,9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10월 ~ 2021. 06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47번가길 *(부암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오*환(고객번호 075760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8,3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9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55번길 *(부전1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임*곤(고객번호 087143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01,50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17. 11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28번길 *(양정1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장*건(고객번호 111588-100, 장*호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2,5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2. 05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105,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정*국(고객번호 09326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9,5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8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32번길 *(전포3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문(고객번호 117405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04,37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2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가길 *(당감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숙(고객번호 101703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1,50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2. 04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91번길 *(당감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최*자(고객번호 100944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1,9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6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78번길 *(당감1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전*훈(고객번호 09999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2,11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2. 02월 ~ 2024,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95번길 *(당감1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조*원(고객번호 08443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,251,1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11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61번가길 *(초읍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남*희(고객번호 086314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175,12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7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74번길 *(양정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현*훈(고객번호 07810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25,7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2. 11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80번길 *(부전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환(고객번호 111422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5,51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3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72,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영(고객번호 111047-909, 3동 51호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1,16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7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문*민(고객번호 112092-947, 5동 58호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3,0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7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진*호(고객번호 111048-913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9,40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11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서*주,김*출(고객번호 112095-928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5,0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1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전*영(고객번호 112095-924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1,9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05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영(고객번호 111054-917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73,8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11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이*형(고객번호 111052-938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4,13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6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철(고객번호 111052-934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41,99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5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박*찬(고객번호 111053-929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54,3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6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61번길 *(개금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두, 김*오(고객번호 094090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219,38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06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*(전포2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한*득(고객번호 10682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61,7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0. 01월 ~ 2024. 01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17번길 *(가야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(정수처분)」, 「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61조(지방세징수예의 준용)」 및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정수처분 된 수용가에 대해 직권폐전 예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건물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55, ☎051-669-5173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전 조치하겠습니다.

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약134만원 비용 발생(15mm기준)

1. 건 명 :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4. 11. ~ 2024. 4. 26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) 내용
 - 가. 수 용 가 : 김*호(고객번호 117531-100)
 - 나. 체 납 금 : 상·하수도요금 37,050원
 - 다. 체납기간 : 2021. 10월 ~ 2024. 02월
 - 라. 급수전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98번길 *(범천동)

2024. 04. 1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

